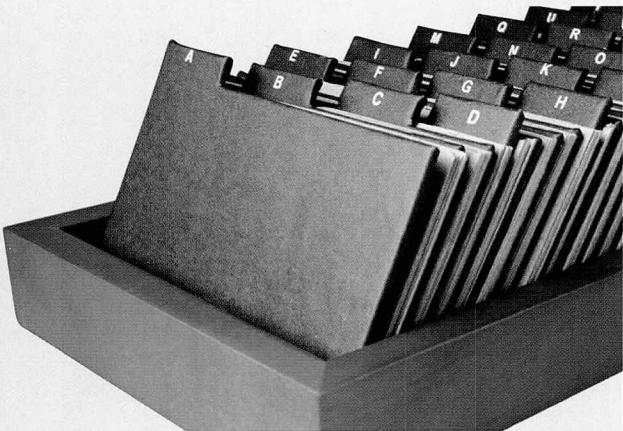


Q & A

궁 · 금 · 합 · 니 · 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2001년 준공된 아파트 단지로 13~15층 건물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특수건물에의 해당 유무와 보험 가입 및 특약 선택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A (1) 특수건물에 속하는 업종 중 아파트는 최고층이 16층 이상인 건물로서, 그 이하의 아파트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제5조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이하 「신배책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2) 2001년 준공한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제정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하면 m^2 당 약 70만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변·발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부대설비에 따라 건물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일반 손해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아파트화재보험에서는 화재(낙뢰 포함)사고 외에 구내에 보일러 및 가스사용기기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발손해를 기본적으로 담보하고 있는데,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흉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수재 위험이 있을 경우 「풍수재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변·발전기, 배전반 등의 전기설비에 화재위험 외 전기적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전기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5) 스프링클러의 오작동 또는 급배수설비의 파손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경우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특약」, 「급배수

설비누출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시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진위험에 대비한 '지진위험담보특약', 손해 발생시 건물신축 단가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재조달기액담보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물을 이용한 소화시 가연성 액체의 인화점이 37.8°C 미만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니까?

A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의 소화약제로 물은 적응성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유류는 물과 섞이지 않으므로 방수시 불붙은 기름이 튀어 위험을 가중시키며 또한 물보다 비중이 낮아 소화수 위로 떠올라 흘러갈 수 있어 연소범위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방음 자재의 비교 우위도를 검토하던 중에 NRC라는 약어를 보게 되는데, NRC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NRC라는 것은 'Noise Reduction Coefficients'의 약자로 소음감소계수를 나타냅니다. 흡음계수 ' α '(KS F 2805 참조)란 각 주파수 대역별로 100Hz~5000Hz까지 산출하며, 각 주파수 대역별로 측정된 흡음계수에 대한 '단일수치평가량'의 개념이 NRC입니다. 250Hz, 500Hz, 1,000Hz, 2,000Hz의 산술평균이 NRC이며, 일반적인 흡음단열재의 경우 그 평가량의 기준이 0.7입니다.

Q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 간 수평거리는 몇 m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소방원리상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으로 2.5m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랙크식 창고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랙크식 창고는 랙크 사이로 통로가 있으며 헤드를 랙크마다 외곽선단에 주로 설치하게 됩니다. 수평거리를 1.7m 이하로 하게 되면 소화효과가 불분명한 랙크 내부에까지 설치해야 하며 그럴 경우 저장을 때문에 살수장애가 발생하여 화재를 제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랙크식 창고는 2.5m 수평거리로 하여 랙크 외관 선단에 설치하며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경우 높이 4m 이하마다 헤드를 추가 설치하게 함으로써 화재를 방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